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상의 명칭을 “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”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의 명칭 변경(안 제명 및 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(현행)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
(개정)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7조, 제8조, 안 제10조~제1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”를 “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자랑스런 구미인”을 “자랑스러운 구미인”으로, “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””을 ““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”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”을 “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심의위원회”를 “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년”을 “연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비치보존”을 “비치·보존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“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선발계획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여된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심의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상의 명칭에 관한 적용례) 제1조,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결정되는 수상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<u>조례</u>	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<u>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밝고 푸르고 살기좋은 구미건설과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<u>자랑스런 구미인</u> 을 찾아내어 “ <u>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</u> “(이하 “구미대상“이라 한다)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자랑스러운 구미인</u> ----- “ <u>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</u> ”--- ----- ----- ----- ---
제2조(상의명칭) 상의명칭은 “ <u>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</u> ”이라 한다.	제2조(상의명칭) ----- “ <u>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</u> ”-----.
제6조(시상심의위원회) ①구미대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<u>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6조(시상심의위원회) ①----- ----- ----- <u>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심의위원회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시상) 구미대상의 시상은 <u>년</u> 1회 시행한다. 다만, 추천 및 심사결과 시상적격자가 없을 경	제7조(시상) ----- <u>연</u> -----.

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제8조(부상) 구미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안</u>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 제10조(기록보존) 시장은 구미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<u>비치 보존</u>하여야 한다. 제11조(수상자에 대한 대우)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<u>각호</u>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제12조(실비변상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<u>각호</u>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	-----. 제8조(부상)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 제10조(기록보존) ----- ----- ----- <u>비치</u> <u>· 보존</u>-----. 제11조(수상자에 대한 대우) 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실비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-	---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김 준 섭
	담 당 자	김 나 영 (480-6754)